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24 (2021. 8. 23 ~ 8. 27)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품 검색결과 순위 기준, 이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맞춤형 광고 사전 고지 의무 부과. C2C 플랫폼에서 분쟁 발생시 개인판매자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분쟁조정기구 및 법원 등에 제공.
	금융 및 구조조정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부여. 내년 3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6개월 추가 연장.
국회 계류안	형사	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응급·위험도 높은 수술 시 촬영 거부 가능. 공포 후 집행 2년 유예.
공포 법령	공정거래 기업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중요 기술 자료 보호 범위 확대. 원사업자와의 비밀 유지 계약 의무화.
입법/행정 예고	건설/부동산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 부여.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위반사항 보고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 · 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 · 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 ·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그들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게 용어들도 정비함. 나.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 1)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 ·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이하 "인접지역 거래"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소비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이데일리 21.08.18. '플랫폼 규율 강화' …유동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48966629148632&mediaCodeNo=257&OutLnkChk=Y	21.08.1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에 '인접지역 거래'의 경우에도, 배달음식료 판매업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 · 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3조제6항) 1)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다시 말해, 사망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3)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1) 국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에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3)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16조 및 제32조) 1)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기준, 소비자 이용후기 등은 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1) 소비자에게 상품 검색결과 순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그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표시되는 내용에 영업비밀은 제외되도록 하고, (2)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그 후기의 수집 ·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바.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안 제18조 및 제32조) 1) 특정 소비자의 기호 · 연령 · 성별 · 소비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받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사.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1)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그에 수반되는 문서송달 등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움. 2) 이에 국내에 주소 ·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아.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및 제30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미흡하고,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에도 그 상품 제조 · 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 규정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위해상품의 회수 · 수거 · 폐기 · 판매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그 상품 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 3) 아울러,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안 제24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1)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이하 “직매입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이하 “중개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2)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 · 대금수령 · 결제 ·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업무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품의 판매주체나 청약접수 등 업무의 수행주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그 상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현행법상 의무와 함께, (1)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님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2) 청약접수 · 대금수령 · 결제 ·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 · 소비자간 거래에 관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 ·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2) 청약접수 · 대금수령 ·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3)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함. 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31조) 1) 중고마켓 등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C2C 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2) 이에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개인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2)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3)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타.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62조 및 제63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이하 "소비자 기만행위"라 한다)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파.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4조) 1)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2) 이에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같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의 내용에 있어서도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하. 금지 · 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안 제66조) 1) 현행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안 제15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약정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금지 · 무효화의 대상이 되는 약정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제(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까지 추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T1G0S8U0O5S0L9F2A5A3Z0U1E4F2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영 (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제8조의3 ·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B1I0I8Z1W2E0B9X3O1F5Q6S6X3G9	이데일리 21.08.20. [e법안 프리즘]이영, 가상자산 시세조정시 손해배상·처벌 추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2966629149288&mediaCodeNo=257&OutLnkChk=Y	21.08.19.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또한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함. ■ 주요내용 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나.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87조의2).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B0D1J2B0T7H1X1E2G9P3F8I1K6L5	한국일보 21.08.23.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료계 "헌법소원 불사"...환자단체는 "환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316540003436?did=NA	20.12.15. 제안 21.02.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1.02.18. 소위 상정 21.04.28. 소위 상정 21.06.23. 소위 상정 21.08.23. 소위 상정/ 의결 (대안반영 폐기) 21.08.23. 상임위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변경하여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함(제2조제15항).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신설). 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제35조의2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이데일리 21.07.24. 하도급거래시 비밀유지계약… 하청업체 중요기술 지킨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9206629117800&mediaCodeNo=257&OutLnkChk=Y	21.08.17. 공포 22.02.18. 시행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라.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8434,20210817)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023/RP		21.08.23. ~ 21.10.0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동아일보][사설]"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2021.08.2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3/108721208/1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어제 정부에 냄.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차라리 정부가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경영계는 요구함.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법을 만들어 놓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음. 정부는 기업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검토해 남은 5개월 동안 시행령을 보완하고 정밀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함.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시행령, 노동자 안전 지킬 수 있도록 보완돼야(2021.08.23)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8232018005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3일 종료됨.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대재해에 해당할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규정했다는 비판이 나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조항도 2인 1조 작업이나 신호수 배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한 기업주가 크게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음.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도 협소하게 규정되어, 이대로라면 지난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노동부는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자 위기대응 TF를 만들어 오는 10월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함. 당국은 그 약속을 지켜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촘촘히 수정•보완해야 함.

[한겨레][사설]중대재해법 시행령, 시민사회 의견 반영해 보완해야(2021.08.2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8643.html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후퇴한데 이어 시행령마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중대재해법 취지는 경영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인데, 시행령은 '안전 점검->보고->예산•인력 반영'의 과정에서 첫 단추인 점검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풀어줌. 외부의 부실한 점검이 원인이 돼 사고가 일어난다면 경영자는 책임을 덜게 됨.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에서 '책임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셈. 위험 작업에 2인 1조 배치 등 합당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의무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음.

또한, 전문가들의 질병의 중대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사업주 책임과의 인과관계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질병들이 중대재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듦. 정부는 삶의 터전인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죽음과 대면해야하는 처지의 국민들을 생각하며 시행령 조항을 가다듬기 바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금융 및 구조조정부문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형사부문



김부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81
E : bskim@draju.com



김진동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5
E : jdkim2@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